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 ----- ----- ----- ----- ----- -----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⑤ (생략)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제76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
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
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 자. (생략)

<신설>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약

제9항-----.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
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
난안전제품

4. (현행과 같음)

5. -----

가.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하
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
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
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
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생략)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
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으로서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
품의 제조·구매계약 또
는 용역계약. 다만, 제30
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
는 물품의 제조·구매계

1) -----

----- 4억
원 -----

----- 2억원 -----

----- 1억6천만원 -----

2) (현행과 같음)

3) -----
-- 1억원 -----

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 다) (생략)

- 6) (생략)

나. ~ 아.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 4) -----
-- 1억원 -----

- 5) -----
-- 1억원 -----

가) ~ 다) (현행과 같음)

- 6) (현행과 같음)

나. ~ 아.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
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
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
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
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
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
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 제27
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
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
목, 같은 항 제2호-----

2. -----
-----.
----- 어느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생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⑦ (생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생략)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

3.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 어느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의2제1항-----

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략)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 어. (생략)

<신설>

5. ~ 7. (생략)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 공고해야 -----.

----- 공고
해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어. (현행과 같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 7. (현행과 같음)

③-----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생략)

5의2.·6. (생략)

④ (생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
---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나. (현행과 같음)

5의2.·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략)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 5. (생략)

⑤ ~ ⑧ (생략)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

-----.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 평가하여 협상적
격자를 선정-----

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⑨ (생략)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 이 경우 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① -----

-----. 이 경우 예정가
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신 설>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2. (생 략)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
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
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
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
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보
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

⑦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
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
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
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

-- 위해를 가한 자

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
한 위해를 가한 자

나. 다. (생략)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나. 다. (현행과 같음)

③

1. -----

----- 제7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

는 자

2.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2. (생략)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

⑤ -----

-- 제3항-----.

⑥ -----

----- 제3항-----.

1. 2. (현행과 같음)

⑦ -----
-----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⑧ -----

----- 제3
항, 제5항 또는 제6항-----

-----.

-----.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⑨ (생략)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1. (생략)

2. 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⑪ (생략)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 -----

-----.

1. (현행과 같음)

2. 제10항제2호-----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⑬ -----
----- 제3항, 제5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⑬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7. (생략)

제6항-----

-- 제10항-----

-----.

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 이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
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
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
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다
만, 조달청의 경우에는 2명으
로 한다.

2.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
斥)된다.

1. ~ 3. (생략)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

②·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국민권
익위원회, 조달청의 -----

----- <단
서 삭제>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중앙

<u>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된 사건</u>	<u>관서</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76조의12(소위원회) ① ----- ----- <u>위해</u> ----- ----- ----- <u>둘 수 있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u>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에 대해 미리 심의 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u>입찰자 중</u>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 ----- ----- ----- <u>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u> -----

-- 따라야 ----.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

-----.

1. _____

가. _____

 _____ 10억 원

나. -----

----- 1억원

다. -----
----- 8천
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u>1억5천만원</u>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u>1억5천만원</u>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u>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u> 말한다. <u><신 설></u> <u>1. (생 략)</u> <u><신 설></u> <u>2. (생 략)</u> <u><신 설></u>	2. ----- <u>5천만원</u> 3. ----- <u>5천만원</u> ② ----- ----- -- <u>다음 각 호의 사항</u>----- -----. <u>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u> <u>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u> <u>고귀속과 관련한 사항</u> <u>2. (현행 제1호와 같음)</u> <u>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u> <u>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u> <u>4. (현행 제2호와 같음)</u> <u>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u> <u>· 해지와 관련한 사항</u>
--	---